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2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임호선·정준호·조인철

위성락 • 이재정 • 안도걸

강경숙 • 권칠승 • 이광희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 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지난 7월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지역대 책본부·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은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 2.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또는 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원인조사의 의무적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단서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	
·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	
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	
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	
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다만, 다음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은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u><신 설></u>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u>재난</u>
<u><신 설></u>	2.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또는 수습본부를 구성・운영
	하게 한 재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